

# 외국인 숙소 운영규정

□ 제정 : 2012. 6. 29.

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본 규정은 수원과학대학교(“이하 본교”) 외국인 숙소(“이하 숙소”)의 효과적인 운영과 관리,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운영기간)** 운영기간은 본교의 학칙에 규정된 수업기간으로 하며, 국제교육원장(“이하 원장”)은 필요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얻어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## 제 2 장 조 직

**제3조(조직)** 숙소에는 원장, 직원, 사감을 둔다.

**제4조(원장)** ① 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원장은 숙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, 소속직원 및 사감을 지도·감독하고, 숙소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.

**제5조(직원 및 사감)** ① 숙소의 직원 및 사감은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직원은 원장의 지휘하에 숙소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.

③ 사감은 숙소의 외국인 유학생을 지도·감독한다.

## 제 3 장 입 소 및 퇴 소

**제6조(입사자격)** 입소자격은 본교에 등록을 필한 외국인학생으로 한다.

**제7조(납부금)** 입소자의 납부금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다.

**제8조(환불)** 환불사유가 타당할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환불한다.

**제9조(시설관리)** ① 본 숙소에 입소한 학생은 실내의 열쇠관리를 직접 본인이 해야 하며, 열쇠 분실시에는 학생 본인이 이를 변상한다.

② 실내 기물의 파손 및 분실로 인한 보수 및 신규 구입 시 실비로 이를 정산한다.

4-2-25 외국인숙소운영규정

③ 숙소의 방 및 공동구간의 청소 및 청결은 학생 본인이 책임진다.

④ 쓰레기 처리는 반드시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에 처리한다.

제10조(숙소비용) 숙소비용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을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.

제11조(기타) 기타 규정은 본교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.

## 제 4 장 회 계

제12조(수입원) 운영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총당한다.

- ① 숙소비
- ② 본교 보조금 및 기타 보조금
- ③ 기타 수입

제13조(예산 및 결산) 회계업무는 본교의 예산회계업무규정에 따른다.

제14조(회계년도) 회계년도는 본교의 회계년도에 따른다.

## 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.